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에 기술된 상호 협력 내용을 기초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교육·홍보 등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력
2.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성인지, 인권, 양성평등 등 교육 상호 협력
3.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캠페인, 홍보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
4.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 조정)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명에 의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4월 6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

민무숙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

양시연